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528
----------	------

2024년 3월 5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2월 1일, 김형재 의원 외 17명
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7일
다. 상정일자 : 제32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4년 3월 5일 상정, 의결(수정안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김형재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코자,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야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가로등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3조9호)
- 가로수의 식재 기준 중 '가로등의 위치'를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하도록

규정함(안 제7조)

3) 가로등의 빛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는 즉시 가지치기를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)

4) 가로수로 인한 가로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빛가림 방지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도록 규정함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가지가 도로 가로등 불빛을 가려 야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“가로수”는 현행 조례 제3조(정의)를 통해 경관조성 및 녹음제공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로와 가로변에 심기 때문에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등 교통환경 또한 개선하도록 정의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가로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(안 제7조제1호가목),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에 ‘가로등의 빛’을 새롭게 규정(안 제8조제3항)하는 한편, 가지치기 원칙에 빛가림 방지를 포함(안 제11조제1항)하는 것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안 제8조제3항1)에서 ‘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’의 조건을 삭제하고 있으나, 안전시설물의 기능상 문제는 해당 관리주체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한 후 가로수 관리청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이와 관련해 가로등 설치 이후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빛가림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해당 도로관리청과 긴밀한 협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.

1)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

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안 제8조제3항 중 ‘도로표지와 가로등의 빛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’의 문구에서 ‘빛’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‘가로등’으로 표기하고 ‘안전시설물을 가리는’의 문구는 ‘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’으로 의미를 구체화²⁾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<u>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</u>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③ ----- 도로표지와 가로등의 빛 ----- 가로수는 -----	③ -----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<u>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</u> -----

또한, 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1항에 대해서도 통일성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 안 제11조제1항³⁾과 관련하여 가지치기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므로 ‘가로등’과 ‘빛가림 방지 등’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2) ‘가로등의 빛’과 관련하여 ‘도로표지’는 운전자가 표지판을 볼 수 있는 면 등 도로환경에 따른 종합적인 기능 및 표지판의 안전성 검토로 해석되는 만큼, 가로등(빛) 또한 기능 및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‘가리다’는 표현보다는 ‘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’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.

3) 제11조(가지치기)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, 아름다운 수형,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, 통행 공간의 확보, 전송·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요지 :

- 안전시설물을 가리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문제는 해당 관리주체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한 후 가로수 관리청에 요청하도록 ‘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’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도록 수정
- ‘가로등의 빛’은 시설물이 아니므로 ‘가로등’으로 표기하고, ‘안전시설물을 가리는’의 문구는 의미를 구체화하여 ‘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’으로 표현하도록 수정

8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2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3월 5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전시설물을 가리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문제는 해당 관리주체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한 후 가로수 관리청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‘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’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.
- ‘가로등의 빛’은 시설물이 아니므로 ‘가로등’으로 표기하고, ‘안전시설물을 가리는’의 문구는 의미를 구체화하여 ‘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’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, 같은 조 제1항 ‘도로표지’로만 된 부분에도 일관되게 ‘가로등’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 골자

- “가로등 및 도로표지”로 ‘가로등’을 포함하여 수정(안 제8조제1항)
- “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” 문구 수정 및 추가(안 제8조제3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3조제9호 중 “가로등“이란”을 “가로등”이란”으로 하고, “부속장치(이하
“가로등“이라 한다)”를 “부속장치”로 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도로표지”를 “가로등 및 도로표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
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관리청은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
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
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“가로등“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<u>시설된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(이하 “가로등“이라 한다)</u>를 말한다.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9. “<u>가로등</u>”이란 ----- ----- ----- <u>부속장치</u>----- <u>치</u>-----.</p>
<p>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될 수 있는 <u>도로표지</u> 등의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<u>가로등 및 도로표지</u> ----- ----- -----</p>

② (생략)

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관리청은 도로표지와 가로등의 빛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는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관리청은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-----

-----.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“가로등”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시설된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.

제7조제1호가목 단서 중 “생장속도”를 “생장속도, 가로등의 위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도로표지”를 “가로등 및 도로표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”을 “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신호등”을 “신호등, 가로등”으로, “안전 등”을 “안전, 빗가림 방지 등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“가로등”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시설된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.</p>
<p>제7조(가로수의 식재 기준)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.</p> <p>1. 교목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식재간격은 6~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,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<u>생장속도</u>,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~ 라. (생략)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7조(가로수의 식재 기준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----- -----. ----- ----- <u>생장속도, 가로등의 위치</u>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될 수 있는 <u>도로표지</u> 등의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</p>	<p>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<u>가로등 및 도로표지</u> ----- -----</p>

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삭 제

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의 안전 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가지치기)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, 아름다운 수형,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, 통행공간의 확보, 전송·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.

② ~ ⑥ (생략)

-----.

③ -----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

-----.

-----.

제11조(가지치기) ① -----

-----.

----- 신호등, 가로등 -----

----- 안전,
빛가림 방지 등-----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